

ESG 위험관리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무역 활성화 방안

장 윤 제*

-
- I. 서론
 - II. 국제무역에서의 ESG 이슈
 - III. ESG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 전략
 - IV. 법적 검토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 V. 결론
-

국문 요약

최근 ESG 관련 규제는 기존에 연성규범으로 존재하던 UN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비구속적 지침에서 각 국가의 법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무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이슈에 따른 수출통제와 더불어, 공급망 실사 및 이에 관한 공시에 대한 규제가 EU로 역외적용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공급망 실사 대응에 관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으며 기업 역시 여러 방법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검토 및 이해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무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ESG 관련 규제를 개관하였으며, 관련하여

*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 법학박사, E-mail: yjjang@shinkim.com

ESG 관점에서의 공급망 실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 및 체계 수립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ESG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정책 및 입법 지원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하여 입법, 행정, 기업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의 역할을 조망하였다.

주제어: 공급망, 실사, 컴플라이언스, ESG, 지속가능성, 지속가능경영, 수출통제, 무역규제

I. 서론

“ESG 이슈”는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분석을 위한 요소로 시작되었으나, 최근 “ESG”라는 개념은 명사화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지속가능성과 혼용되며 정치적 선호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¹⁾²⁾ 특히 국내에서 ESG는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로 이해되며,³⁾ 지속가능성과 대체 관계에 있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⁴⁾⁵⁾

2022년 기준 무역의존도가 약 80%에 달할 정도로 높고⁶⁾ 자본시장을 통한 자기자본조달의 중요성이 낮은 우리나라는,⁷⁾ ESG 투자가 ESG 화두를 견인한 해외의 사례와 달리 “ESG 경영”이라는 국내 특유의 개념이 특히 강조되며,⁸⁾ 이는 최근 무역장벽 대응의 중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⁹⁾

1) Pollman, Elizabeth. “The making and meaning of ESG.” U of Penn, Inst for Law & Econ Research Paper 22-23, 2022, pp. 9-26.

2) 지속가능성이란 통사적 의미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자원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meeting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1987.

3) 한국거래소, “ESG의 개념.”

〈<http://esg.krx.co.kr/contents/01/01010100/ESG01010100.jsp>〉 (최종확인 2023. 7. 31).

4)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2020, p. 2.

5) 다만 이는 최근 ESG에 대한 개념의 혼란스러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히 국내에서 그 현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된다. ESG가 처음 등장한 보고서에서는 두 개념이 다름을 인지하여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자제함을 밝히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ESG와 지속가능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양한 논증이 시도되고 있다. THE GLOBAL COMPACT,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vii”, 2004, pp.1-2; HSBC, “Sustainability vs ESG: What’s the Difference and Why They Matter.” 〈<http://www.businessgo.hsbc.com/en/article/demystifying-sustainability-and-esg>〉 (최종확인 2023. 7. 31); KPMG, “No, ESG is not the same as Sustainability.” 〈<http://kpmg.com/nl/en/blogs/home/posts/2022/07/no-esg-is-not-the-same-as-sustainability.html>〉 (최종확인 2023. 7. 31) 등.

6) 연합인포맥스, “미중 갈등 고조되는데...韓 무역의존도 80% 육박”, 2022. 8. 4.

7)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로, 자산가치와 주가가치가 동일하여 주가가치의 중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매일경제, “여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개도국 증시보다 대접 못받는 한국 증시”, 2023. 5. 3.

8) 장윤제, “ESG 관련 투자계약의 법적 분쟁 사례와 쟁점”, 「기업법연구」 제36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22, pp. 188, 213-214.

9)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환경 이슈를 무역장벽 구축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ESG의 핵심 요소인 환경과 인권, 반부패는 최근 국제통상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그 범위는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정부 주도의 ESG 진단 및 컨설팅, 정보기반 마련, 인력·자금여건 개선,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 다양한 공급망 실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¹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다양한 경영환경 및 대응 필요규범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¹¹⁾ 따라서 각 기업의 법무 담당자 및 ESG 담당자, 통상 담당자는 자사의 경영환경 및 대응이 필요한 법률, 국제규범, 이니셔티브를 검토하여 비용효과성을 최적화하여 대응하여 ESG 이슈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역시 최소한의 정책과 입법, 이해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규제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무역에서의 장벽이 될 수 있는 ESG 위험 관리 관점의 공급망 실사에 대한 주요 연성규범과 법률, 이니셔티브를 살피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확인한다. 또한 정책 및 입법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과 더불어 법적 검토를 통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여, ESG 화두에서 법조의 역할을 확인코자 한다.

II. 국제무역에서의 ESG 이슈

1. 연성규범에 의한 규율

1) OECD 책임경영을 위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경제,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기업, ESG경영 서둘러 ‘新무역장벽’ 돌파해야”, 2021. 3. 15.

10)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2023. 5. 24.

11) 다양한 ESG 지표를 표준화하고자 한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 등은 오히려 기존의 지표에 고려해야 할 지표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실무상 부담을 더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ESG 지원 정책은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상장기업에 요구되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기업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 반영”, 2023. 8. 4. 등.

OECD 책임경영을 위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특히 환경, 인권, 부패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활동이 인간, 지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다국적기업에 공동으로 제시하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공급망 실사법 및 ESG 공시제도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EU 택소노미 등의 참조 기준이자 ESG 경영에 관한 평가기준 및 이니셔티브의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¹²⁾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한국을 포함한 47개국의 수락국들이 국가별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를 설치하여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¹³⁾ 한국 NCP(KNCP) 역시 샤넬코리아, 한국지엠, 삼성중공업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한 조정 신청에 따른 분쟁 사례가 공개되어 있으며, 현재 약 32건의 주요 분쟁 사례가 공개되어 있다.¹⁴⁾

OECD 가이드라인은 1976년 도입된 이래 변화하는 시대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7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1년에는 인권에 관한 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2년이 경과한 2023년 6월 8일에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¹⁵⁾¹⁶⁾

- 가. 기업이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부합하도록 권장
- 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자금 조달, 판매, 라이선스, 거래 및 사용에 대한 실사
- 다.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영향 및 비즈니스 관계에

12) 법무법인 세종, “OECD, 10년 만에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2023. 7. 21.

13) KNCP,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배경.

〈http://www.ncp.or.kr/servlet/kcab_ncp/info/1000〉 (최종확인 2023. 7. 31).

14) KNCP, “NCP 분쟁 사례.”

〈http://www.ncp.or.kr/servlet/kcab_ncp/info/4000〉 (최종확인 2023. 7. 31).

15) 법무법인 세종, 앞의 뉴스레터.

16) OECD, “2023 update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http://mneguidelines.oecd.org/targeted-update-of-the-oecd-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htm>〉 (최종확인 2023. 7. 31).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라. 사업 수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위험에 처한 개인 및 그룹에 대한 더 나은 보호

마. 책임 있는 업무 수행 정보 공개에 대한 권장 사항 업데이트

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한 실사 권고 확대

사. 로비 활동이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기업의 권장 사항

아.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을 위한 국가 점점의 가시성, 효율성 및 기능적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강화

OECD 가이드라인은 일견 직접적으로 무역에 적용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 무역과 투자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역과 투자에 관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¹⁷⁾ 또한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범위를 공급망으로 확장시켰고 위험 기반의 실사를 중요시하여 향후 ESG 문제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공급망 실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¹⁸⁾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에 관한 문제는 결국 수출입과 직결되므로 OECD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수출입 시 ESG 관점에서의 실사가 강화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항은 향후 살펴볼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 무역과 관련된 ESG 규제의 제정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조되고 있다.

2)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UNGPs)

UN 인권이사회는 2011년 제17차 회기에서 국가 및 다국적 기업, 기타 비즈니스 기업에게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를 승인하였다. 인권이사회는 독립된 저문가로 구성된 워킹그

17) 2023년 2월 개최된 책임경영과 관련된 OECD 회의에서도 규칙 기반의 무역의 중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OECD, “OECD Ministerial Meeting -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the global economy”, 2023. 2. 14-15.

18) 법무법인 세종, 앞의 뉴스레터.

룹에 이 지침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확산과 이행을 증진하도록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관련하여 우수사례를 다국적기업 등 다양한 권리주체와 공유하고 교육하며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⁹⁾ 특히 2021년 워킹그룹은 UNGPs의 향후 10주년 성과 창출을 위해 8가지 목표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으로 하여금 효과적 공시와 투명성을 통해 공급망에서의 인권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인권실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투명성 요건을 수반한 실사제도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ESG 보고를 재무보고와 유사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²⁰⁾

이 지침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기본 지침 및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 및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 이니셔티브가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UNGPs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여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서 공급망 인권실사를 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나, 독일 정부의 NAP 모니터링 결과 공급망 실사 의무를 이행한 기업이 적어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이 확인되어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하게 되었다.²¹⁾ 이처럼 이후에 살펴볼 무역과 관련된 ESG 규제 역시 이 지침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른 인권실사를 공급망 실사의 표준으로 준용하고 있다.

3)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OECD 기업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OECD 기업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19)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2011, pp. 6-8.

20) United Nations Hyman Rights Special Procedures, “UNGP 10+ -A ROADMAP FOR THE NEXT DECAD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2021, p. 47.

21) 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Lieferketten.”
 <http://www.bafa.de/DE/Lieferketten/Ueberblick/ueberblick_node.html;jsessionid=C58093C40893C40B5D7681231957CD8C.intranet241#doc1469782bodyText5> (최종확인 2023. 7. 31).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의 목적은 기업실사에 대한 권고사항들과 함께, 관련 설명을 통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하여 실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들로 하여금 이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공급망 및 기타 사업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근로자, 인권, 환경, 뇌물수수, 소비자 및 기업지배구조 등에서 발생할 여러 부정적 영향들을 방지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 지침은 독일 쉘로스 엘마우(Schloss Elmau)에서 2015년 6월 7~8일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정상선언에 반영되어, 중소기업의 기업실사에 관한 공통된 이해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17년 7월 8일 함부르크에서 채택된 G20 정상 선언에서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포괄적인(inclusive) 공급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동, 사회 및 환경 기준, 인권에 관한 이행을 촉진하고 실사를 실시할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²²⁾

OECD 실사 지침은 각 산업별로 세분화되어 광물, 의류 및 신발, 농업, 광물 공급망에서의 아동노동, 채굴, 금융 분야에 각각 실사 지침이 발간되었으며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지침 및 법률은 이를 인용하여 실사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법률에 의한 규율

1) 무역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

경제 제제는 인권보호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제제에는 상품의 수출입 금지나 기술 및 서비스의 수출, 재수출, 제공 금지, 금융제재, 선박 입항 금지 등이 있으며 특히 제재대상국과의 교역관계를 고려하는 조치를 '무역제한조치'로 분류된다.²³⁾ 이하에서는 ESG의 중요 이슈인 환경 및 인권, 반부패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무역제한조치가 적용되는 해외의 주요 법률에 대하여 확인한다.²⁴⁾

22) OECD,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 p. 3.

23) 허난이,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법상 무역제한조치의 국제규범 합치성 검토— 미국 「위그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64호, 안암법학회, 2022, pp. 437-438.

(1)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및 수출통제개혁법

냉전체제 종식 직후 1989년, 1979년 수출관리법의 법적 효력이 만료되었고²⁴⁾ 1994년 효력연장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폐지되었다. 이에 산업용 이중용도물품의 통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의해, 군용품목은 무기수출 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에 의해 유지되도록 수출통제시스템이 정비되었다.²⁶⁾ 그러나 IEEPA는 대통령이 국가긴급사태 또는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선포한 사건을 대상으로만 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8년 6월 의회에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s Act, NDAA)에 포함되어 승인된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의해 미국의 수출통제체제는 군용품목을 규율하는 AECA와 대량살상무기를 규율하는 IEEPA, 산업용 이중용도물품을 규율하는 ECRA로 정리되었다.²⁷⁾ 특히 ECRA 4811조는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의 하나로써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테러 방지와 인권 보호 및 민주주의 증진을 포함한 외교 정책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 주무부처는 상부무 소속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며, BIS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 따라 수출통제 대상 품목 및 국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BIS는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기업의 Entity List 추가,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강화, 인권 침해에 사용가능한 품목의 통제, BIS 수출허가 검토 시 인권적 요소 고려 등을 통해 목록기반 / 최종사용자 기반 / 최종용도 기반 통제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관련 인권 이니셔티브

24)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 제재에 관한 해외 법률도 제정되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ESG의 각 주제에 관한 일반적인 수출통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5) KOTRA, “미국 수출통제 제도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 p. 4.

26) 박언경·왕상한,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의 함의”, 「법제연구」 제61호, 한국법제연구원, 2021, p. 303.

27) 박언경·왕상한, 위의 논문, pp. 303-304.

발표 및 EU와의 협력 등 지속적으로 인권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²⁸⁾

(2) 미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위르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라 한다.)은 2021. 12. 23 발효되어, 1930년 관세법 307조²⁹⁾를 집행하는 법이 되었다. UFLPA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하 “신장 지역”)에서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정한 중국의 단체(강제노동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에 의해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굴, 생산, 제조된 경우,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하여 미국 내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UFLPA에 의거하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은 중국산 제품, 또는 상품의 제조 공급망에 중국이 관여된 상품 또는 부품을 억류할 수 있다.³⁰⁾

국토안보부는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의 의장으로서 2022.6.21.에 발표한 UFLPA 전략을 참고하여 수입업체 관련 지침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CBP는 UFLPA에 따른 상품 억류 관련 모범 사례 및 수입업체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며 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할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상품 또는 부품이 UFLPA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래 <표 1>에 예시된 바와 같은 공급망 실사관련 정보로 입증하여야 한다.³¹⁾

<표 1> 강제노동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정보의 종류	예시
문서화된 실사(Due Diligence) 시스템 또는 절차	• 강제 노동 실사를 위한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 공급망 맵핑 및 강제노동 위험 평가 • 공급업체 행동규범 • 강제노동 위험 관련 교육 • 행동규범 준수 여부 모니터링 등

28) 박효민·이인화, “인권을 근거로 부과되는 수출통제 및 제재”, 「무역안보 BRIEF」 2022 Vol. 2, 전략물자관리원, 2022, pp. 6-10.

29) “...goods, wares, articles, and merchandise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wholly or in part in any foreign country by convict labor or/and forced labor or/and indentured labor under penal sanctions.”

30)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PERATIONAL GUIDANCE FOR IMPORTERS”, June 13, 2022.

31) 법무법인 세종, “미국 및 EU 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美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집행 강화 및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입안 경과”, 2023. 7. 3.

정보의 종류	예시
공급망 추적 정보	• 공급망 전반에 관한 증거 (채굴, 생산, 제조 모든 단계를 포함한 공급망의 상세 설명) • 상품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한 증거 (원산지 증명서, 화물 영수증, 재료 구성표 등) • 채굴자·생산자·제조업자에 관한 증거 등
문서화된 공급망 관리 조치	• 채굴, 생산, 제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시정하도록 설계된 내부통제 등
상품이 신장 지역에서 채굴, 생산, 제조에 기반하지 않음에 대한 입증	• 상품의 공급망을 추적하는 문서 등
중국산 상품이 강제 노동에 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문서	• 상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공급망 지도 • 중국산 상품 생산과 관련된 업체별 1인당 임금 및 생산성 • 근로자 채용 및 내부통제에 관한 정보 • 신뢰성 있는 강제노동 관련 감사 등

(3) EU 이중용도 규정

2016년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사이버 감시 기술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출통제기본법인 “EU 이중용도 규정(EU Dual Use Regulation)”의 재검토를 제안하였으며, 집행위원회와 EU 의회, 이사회 간 논의를 진행한 끝에 2021.6.11. EU는 새로이 개정된 수출통제규정을 도입하였다.³²⁾

특히 이 수출통제규정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핵확산금지조약, 화학 무기 협약 및 행물 무기 협약에 의거한 EU 및 회원국의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며, EU의 글로벌 전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전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의 수출통제규정은 다음을 포함하는 EU의 수출 통제 체제를 규율한다.³³⁾

32) EUR-Lex,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recast) - of 20 May 2021”, 2021. 6. 11.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21:206:FULL&from=EN>〉 (최종확인 2023. 7. 31).

33) European Commission, Exporting dual-use items.

〈

- 가. 수출통제를 위한 평가 기준 및 권한 유형을 포함한 수출통제 규칙
- 나. EU 공통 이중 용도 품목목록
- 다.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또는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미등록 품목 사용 통제
- 라.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중개에 대한 통제
- 마. 수출업자가 도입해야 할 구체적 통제 조치와 컴플라이언스 사항
- 바. 주무부처의 네트워크

특히, EU의 수출통제규정은 인권침해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 이중용도 품목(상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추가하여, 수출자가 주무부처로부터 수출하려는 당해 품목이 수입국의 내부 탄압, 심각한 인권 및 국제인도법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정 이중용도품목으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신규 EU 규정은 수출기업의 실사 의무를 도입하여, 수출자가 수출하려는 품목이 수입국의 내부 탄압, 심각한 인권 및 국제인도법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실사 결과에 따라 알고 있는 경우, 수출자는 당해 사실을 권한 당국에 알려야 하고 주무부처는 당해 제품에 대해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³⁴⁾

2) 공급망 실사 의무 규정을 통해 역외 무역에 간접 적용되는 법률

(1)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명시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채택한 이후, 유럽 내에서도 인권 및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실사의무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2020년 12월, EU 이사회는 집행위에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부문 간 기업 실사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EU 법적 틀에 대한 제안을 제시할 것을, 2021년 3월 EU 의회 또한 집행위원회에 의무적인 공급망 실사에 대한 입법안의 제출을 각각 요구하였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지속가

34) 박효민 · 이인화, 앞의 논문, pp. 14-15.

능하고 책임있는 기업 행동을 촉진, 기업운영 및 지배구조에 인권과 환경 고려를 정착하고 기업이 역외 가치 사슬을 포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 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제안하게 되었다.³⁵⁾ 실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의무는 다음과 같다.

〈표 2〉 공급망 실사 의무

구분	내용
모든 기업 정책에 통합된 실사 정책의 수립	기업은 실사에 대한 기업의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 직원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동 강령, 실사의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는 사내 실사 규정(due diligence policy)를 마련하고 매년 이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	기업은 동 식별 및 평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중견기업은 관련 고위험산업에 관한 부정적 영향 중 본질적으로 중요하거나 다수의 사람 또는 광범위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 제거 및 최소화	기업은 동 예방,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의 계약상 보증(contractual assurance) 수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부정적 영향을 예방, 제거 및 최소화 할 수 없거나 해당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경우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새로운 사업 및 기존 사업의 확장 등을 지양하거나 기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 및 종료하여야 한다.
부정적 영향에 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의 구축 및 유지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complaints procedure)를 구축하여야 하며, 동 절차를 통해 우려를 제기한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사정책 및 조치의 효과에 대한 감독	기업은 사내 실사 규정의 효율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최소 12개월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동 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내 실사 규정을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실사 내용의 공시	기업은 실사의무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설명서를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때,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 협약의 위반을 의미한다.

35)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http://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doing-business-eu/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_en> (최종확인 2023. 7. 31).

〈표 3〉 위반 금지 협약의 목록³⁶⁾

구분	위반 금지 협약
인권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3. 최저연령협약(1973년)(국제노동기구(ILO) 제138호 협약) 4.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국제노동기구(ILO) 제182호 협약) 5. 강제근로 협약(1930년)(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 6. 동등보수 협약(1951년)(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협약) 및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958년)(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환경	1. 생물다양성협약(1992) 2.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3.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5.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6.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7.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8.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9.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 협약) 10.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MARPOL 73/78) 1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특히 CSDD는 일정 규모의 기업에 대해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어, 공급망뿐만 아니라 역외 기업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6) European Commission, "ANNEX to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http://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2-02/1_2_183888_annex_dir_susta_en.pdf>
 (최종확인 2023. 7. 31).

〈표 4〉 각 (안)에 따른 역외 기업 적용 시기³⁷⁾

구분	집행위원회(안)	이사회(안)	의회(안)
발효 2년 후	EU 내 순매출 1.5억 초과		
발효 3년 후		EU 내 순매출 3억 초과	EU 내 순매출 1.5억 초과 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의 최종 모회사
발효 4년 후	EU 내 순매출 4천만 초과 1.5억 이하, 매출의 50% 이상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EU 내 순매출 1.5억 초과	
발효 5년 후		EU 내 순매출 4천만 초과 1.5억 이하, 매출의 50% 이상 고위험 산업에서 발생	EU 내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세계 순매출 1.5억 초과, 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의 최종 모회사

(2)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U는 특정 대기업에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 및 환경 문제를 관리하게 하며, 이는 이해관계자의 성과평가와 기업의 자발적 책임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EU는 기존에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에 따른 ESG정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NFRD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물다양성 영향 요인 등 중요 지속가능성 정보가 생략되었으며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의 문제가 있었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그린워싱 및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효과적인 감사를 수반하는 강력하고 저렴한 보고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CSRD로 개정되었다.³⁸⁾

37) 법무법인 세종, 미국 및 EU 發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美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집행 강화 및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입안 경과, 2023. 7. 3.

38)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http://finance.ec.europa.eu/capital-markets-union-and-financial-markets/company-reporting-and-auditing/company-reporting/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_en> (최종확인 2023. 7. 31).

〈표 5〉 CSRD 공시 항목³⁹⁾

구분	위반 금지 협약
사업 모델 및 전략	-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위험에 대한 사업 모델 및 전략의 탄력성 -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사업 기회 -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1.5℃ 제한 및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양립 가능한 사업 모델 및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실행 조치 및 관련 재정 및 투자 계획 - 사업 모델 및 전략이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기업의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여부 - 지속가능성 문제에 관하여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여부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목표	- 최소 2030년 및 2050년의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함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기한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기업의 목표가 명확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내부 구조	-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행정, 경영 및 감독 조직의 역할과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및 기술 또는 해당 전문성 및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정책, 관련 경영 및 감독 조직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제도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실사	-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시행 중인 실사 프로세스 - 제품 및 서비스, 사업 관계 및 공급망을 포함하여 기업의 영업 및 가치 사슬과 관련하여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및 그러한 영향의 식별 및 감독을 위한 조치 - 실사 프로세스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이 확인하여야 할 기타 부정적 영향 -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 개선 또는 교정하기 위하여 기업이 취한 모든 조치 및 그러한 조치의 결과 -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주요 위험과 해당 위험에 기업이 종속된 정도 및 위험관리 방법
ESG 관련 사항	-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 자원, 자원의 사용 및 순환 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포함하는 환경 요소에 대한 정보 - 성평등·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훈련 및 기술 개발·장애인 고용·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다양성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대우 및 기회, 고용 안정성·근로 시간·적정임금·사회적 대화·결사의 자유·노동조합의 존재·단체 교섭권·일과 삶의 균형·건강과 안전 등 근로 환경, 인권·기본적 자유·민주주의 원칙 등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는 사회 및 인권 요소에 대한 정보 -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행정·경영 및 감독 조직의 역할·구성 및 전문성,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관련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 반부패·뇌물 수수 금지·내부고발자 보호 및 동물 복지 등 기업 윤리 및 기업 문화, 로비 활동을 포함하는 기업의 정치적 활동, 지불 관행을 포함하는 협력사와의 관계 등 거버넌스 요소에 대한 정보

39) EUR-Lex,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특히 공시 항목에서 확인되듯이, CSRD는 지속가능성 관련 실사를 공시 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실사를 공급망을 포함하여 앞에서 살펴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요구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CSRD 역시 최소 하나의 자회사 혹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점이 있는 비 EU 기업으로, EU 내 순매출이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2028년부터 직접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다.⁴⁰⁾

〈표 6〉 CSRD 적용 시기

FY2024 (2025 공시)	FY2025 (2026 공시)	FY2026 (2027공시)	FY2028 (2029 공시)
•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 수 500명을 초과하는 상장 대기업 • 연결재무제표가 대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그룹 모회사	•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 수 500명 이하의 상장 대기업 • 연결재무제표가 대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 수가 500명 이하인 그룹 모회사	• 초소형기업 외 상장 소기업 및 중기업 • 기타 상장 신용 기관 및 보험 회사	• 초소형기업 외 상장된 소기업 및 중기업을 자회사로 둔 제3국 기업 • EU 내 대기업을 자회사로 둔 제3국 기업

위 표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초소형기업 등의 개념은 NFRD 기준(Directive 2013/34/EU)와 동일하며, 다음 3개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하여야 한다.

〈표 7〉 EU의 기업 규모 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초소형기업
•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초과 • 순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수 250명 초과	•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하 • 순 매출 4천만 유로 이하 •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수 250명 이하	• 자산총액 4백만 유로 이하 • 순 매출 8백만 유로 이하 •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수 50명 이하	• 자산총액 35만 유로 이하 • 순 매출 7십만 유로 이하 • 회계연도 동안 평균 직원수 10명 이하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Text with EEA relevance).”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2L2464>〉 (최종확인 2023. 7. 31).

40) 법무법인 태평양, “ESG 공시, 쉽게 이해하기 - 유럽의 지속가능 공시, ESRs에 답이 있다.” 2023. 1. 6.

(3) EU 배터리 규제

2023년 8월 17일 발효되는 신규 EU 배터리 규제는 EU 시장 내에서 EU 시장 내에 배치된 모든 유형의 배터리의 모든 제조업체, 생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 적용되며,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에 관하여 원자재의 원산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특히 공급망 관리와 관련하여 EU 시장 내에서 배터리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주체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2차 재료의 조달, 가공 및 거래에 내재된 사회적, 환경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실사 정책을 OECD 실사지침 및 UN 기업인권지침 등에 따라 개발하고 구현해야 한다. 특히 신규 규제는 다음 사항을 주요하게 규정하였다.⁴¹⁾

〈표 8〉 EU 배터리 규제 주요 도입 내용

구분	내용
지속 가능성 및 안전: 탄소 발자국 및 유해 물질 제한	- 용량이 31kWh 이상인 모든 EV 배터리, LMT 배터리 및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에는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재활용 코발트, 납, 리튬 및 니켈의 수준을 나타내는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지울 수 없는” 탄소 발자국 선언 및 라벨이 있어야 한다. - 수은, 카드뮴 및 납의 사용을 제한한다.
공급망 관리: 실사 요구 사항	- EU 시장 내에서 배터리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 운영자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2차 재료의 소싱, 가공 및 거래에 내재된 사회적, 환경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실사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한다. - 경제주체는 OECD 실사 지침 및 UN 기업인권 이행지침과 같은 공인된 국제 표준에 따라 나열된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코발트, 천연 흑연, 리튬, 니켈 및 기타 화합물의 공급에 관한 실사 정책을 채택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라벨링 및 정보	- 디지털 배터리 여권: EV 배터리, LMT 배터리 및 2kWh 이상의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는 배터리 모델, 용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필요하며, 모든 배터리에는 용량, 성능, 내구성 및 화학 성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라벨과 QR 코드가 있어야 하며 “분리 수집” 기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41) White&Case, “New EU Batteries Regulation: introducing enhanced sustainability, recycling and safety requirements”, 2023. 8. 2.
〈<http://www.whitecase.com/insight-alert/new-eu-batteries-regulation-introducing-enhanced-sustainability-recycling-and-safety>〉 (최종확인 2023. 7. 31).

구분	내용
	- 라벨 변경 사항: 모든 배터리는 EU에서 적용되는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 표준을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재활용 - 수명 종료 관리	- 폐배터리 매립을 전면 금지하며, 모든 폐배터리는 경제주체가 무료로 수거해야 한다.
최종 사용자의 의무	- 최종 사용자는 생산자가 지정한 지정된 별도의 수거 장소에서 폐배터리를 다른 폐기물 흐름과 별도로 폐기해야 한다. - 최종 사용자(LMT의 경우 전문가에 의해)는 사용 중인 기기에서 모든 휴대용 배터리를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주체는 발효 후 42개월 이내에 이 새로운 요구 사항에 맞게 제품 설계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는 발효 후 42개월 이내에 이 새로운 요구사항에 맞게 제품 설계를 조정해야 하며, 공급망 실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분쟁광물에 대하여 인권 관련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EU 분쟁광물 규제, 마찬가지로 분쟁광물 관련 공급망 실사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미국의 Dodd-Frank Act 및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그 외 EU의 삼림공급망실사법(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영국 및 호주의 현대판 노예 방지법, 캐나다의 특별경제조치법 및 해외공무원반부패법,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등 다양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법률이 발효되어 있다.⁴²⁾

3. 자율적 이니셔티브에 따른 규율

1) 산업 이니셔티브

연성규범에서 요구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요구사항은 각 산업에서

42) International Trade Council, “The Importance of Supply Chain Transparency”, 2023. 1. 11. <<http://thetradeCouncil.com/2023/01/11/the-importance-of-supply-chain-transparency/>> (최종확인 2023. 7. 31).

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산업의 이니셔티브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입법이 예정되고 기업실사의 관행이 확대되며 각 산업별로 공통적으로 공급망 실사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기 전 상황에서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산업별 이니셔티브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이니셔티브는 산업별로 다른 공급망의 특성을 감안하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공급망 실사의 주체 및 객체가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역시 산업별 이니셔티브에 의한 공급망 실사에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이니셔티브에 따른 실사정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그에 따라 계약 중단 및 공급망 배제 등 사적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수출을 하는 중견,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간접 공급망까지도 이니셔티브를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어, 최근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과 함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표 9〉 주요 산업별 공급망 실사 이니셔티브⁴³⁾

ESG 이니셔티브	대상 산업	주요 요구사항 및 특징
Drive Sustainability (벨기에)	자동차 제조사(생산, 설계, 조립), 부품 생산기업, 원자재 공급기업, 물류업체 등	• 협력 기업은 각 자동차 기업의 규정 및 국제 기준·업계관행을 가이드로 사용 가능 • 해당국 법률을 기준으로 사용(단, 현지 법률 부재 시 회사 표준/정책과 산업 관행 및 국제 프레임워크 준수) • 관리시스템 구현 - 국제 표준 인증 권장 (ISO/MSS/SA8000 등) • 협력업체는 이니셔티브 해당 법률 준수 및 관련 자료 제공 의무
PSCI (영국)	제약사, 제조사, 원자재 공급자, 유통업체, 연구기관, 장비 및 기계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자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PSCI 평가 및 모니터링 • 윤리, 노동, 건강 및 안전, 환경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권장

43) KOTRA, “유럽 ESG 이니셔티브와 평가제도”, 2023. 6. 28.

〈http://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pNttSn=203550〉 (최종확인 2023. 7. 31).

ESG 이니셔티브	대상 산업	주요 요구사항 및 특징
	등 제약 산업 내 운영되는 회사	• 건강 및 안전기준 협력 업체까지 확대 • 온실가스 GHG 배출량 모니터링
Responsible Steel (영국)	철강 생산기업 및 가공기업, 철강 거래기업, 원자재 공급자, 다운스트림 사용자, 산업 협회, 서비스 제공자·광산·최종 생산지는 적용 제외)	• certified steel 인증(파리협정 유엔기후변화협약기준 GHG 배출 준수 및 12개월 테스트 단계 필요) • 인증서 3년간 유효 • 인증 과정에 다운스트림 포함
RMO(The Raw Material Outlook (벨기에)	Drive Sustainability 회원사 및 협력사, 원자재 생산·거래·유통기업, 제조업체(자동차, 건설, 전자 등)	• 협업 추진 및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타진 • Drive Sustainability 2030 전략 중 주요 단계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을 통한 가치 사슬 추가 분석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 (말레이시아)	팜유 생산자, 가공업체 및 제조업체, 정부 기관	• CSPO(RSPO Certified Sustainable Palm Oil)인증 제도 실시 • 근로자, 지역사회 및 복지 증진을 포함 8가지 규정 통과 시 인증 가능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SAC)(미국)	의류, 신발, 섬유 산업 기업 및 가치 사슬 내 관련 소매업체,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	• Higg 지수(Higg Index): 가치사슬 지속가능성 측정을 위해 SAC에서 개발 • FEM, SLM, BRM, PM, MSI의 5개 하위 메뉴에서 지속가능성 평가

2) ESG 공시 및 평가 이니셔티브

앞에서 살펴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ESG 공시 이니셔티브와 함께 동일하게 ESG 실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ESG 평가 기준은 그에 따라 공급망과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ESG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ESG 공시 이니셔티브인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경우,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델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와 예상 영향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⁴⁴⁾ 또한 오랜

44) IFRS,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2023, p. 11.

기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작성 표준으로 기능하여 온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정보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 2021 역시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 성과 평가 및 사회적 위험 평가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협력업체의 비율과 대응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⁴⁵⁾

또한 글로벌 ESG 평가 기관으로 유명한 S&P Global Ratings와 국내 평가사인 한국 ESG 기준원 역시 친환경 공급망 정책 등 협력업체 행동강령, 공급망 위험 노출도 확인, 공급망 관리 전략의 ESG 통합 등을 평가에 요구하고 있다.⁴⁶⁾ 특히 한국 ESG 기준원과 또 하나의 주요 글로벌 ESG 평가사인 MSCI는 자회사 및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ESG 관련 이슈 역시 모회사 및 모기업의 ESG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급망 실사의 주체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⁴⁷⁾

III. ESG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 전략

1. 전략의 목적 및 방법

1) 수출입 안정화의 목적에 따른 방법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기업의 공급망과 관련된 인권과 환경, 반부패 등 ESG의 요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따른 장기적 기업가치와 이를 평가하는 이해관계자의 결정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수출통제와 간접적 무역장벽이 되어 단기적 기업가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45) 장혜진·최윤정, “ESG 환경에서의 공급망 실사법”, 『환경법연구』 제45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23, p. 258.

46) S&P Global, 2023 CSA Handbook, 2023; 한국ESG기준원, KCGS ESG 모범규준, 2022.

47) 한국 ESG 기준원은 매 분기 발생한 주요 ESG 이슈를 통해 평가등급을 하향하는데, 2022년 3분기 등급조정 7개사 중 5개사가 협력사 및 사업장 관련 사건·사고였으며 2022년 2분기 등급조정 12개사 중 6개사가 협력사 및 사업장 관련 사건·사고였다. 한국ESG기준원, “2022년 2분기 ESG 등급 조정”, 2022. 4. 12; 한국ESG기준원, “2022년 3분기 ESG 등급조정”, 2022. 7. 12.; MSCI, “MSCI ESG Controversies and Global Norms Methodology”, 2023.

다만 살펴본 주요 법률은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주로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 및 상장기업에 대해 ESG 이슈 관리를 요구하며,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인권 문제에 따른 수출입 통제가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수출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의 경우, 글로벌 공시 이니셔티브나 평가기관이나 등이 요구하는 상장기업에 대한 ESG 관리 요구사항보다는 수출입과 관련된 ESG 관련 컴플라이언스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 대상이 되는 국가 및 거래 물품에 따라 요구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거래 대상이 되는 국가 및 거래 물품이 수출통제 및 ESG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된 국가는 다음 표와 같이 관련하여 대상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0〉 CBP의 실사 관련 제공 자료

구분	자료명
국제 표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국제노동기구)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노사정 원칙 선언
	ILO 강제노동 퇴치 : 고용주와 기업을 위한 핸드북
	강제노동 측정에 관한 ILO 지침
	ILO 공정 채용을 위한 일반 원칙 및 운영 지침
	IOM(국제이주기구)의 윤리적 채용 기준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관한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가이드
미국 정부 발간	미국 노동부, 규정 준수 체인
	미국 국무부, 책임있는 조달 도구
	연방 조달 규정
	책임있는 기업 행동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
	신장 공급망 비즈니스 자문
	CBP 컴플라이언스 간행물
	CBP 강제노동 웹사이트 리소스
	CBP 억류 명령 및 조사 결과
기타	강제노동에 관한 7개국 무역장관 성명
	인신매매 법률 센터의 무역에서의 자유: 공급망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미국 관세법의 사용

2) 안정적 공급망 운영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

상장기업 및 비상장 기업이더라도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최근 ESG 이니셔티브와 공급망 실사가 화두가 됨에 따라, 어느 나라와 수출입을 하더라도 ESG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경우 안정적 공급망 운영과 거래선 확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이니셔티브에 대응하는 공급망 ESG 실사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사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결정 이전에 적절한 주의를 다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해외의 공급망 실사법은 공급망과 관련된 주의의무에 관한 법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그에 따라 공급망 ESG 실사는 공급망의 ESG 이슈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 및 이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⁸⁾

글로벌 ESG 투자의 활용 도구가 되는 ESG 평가 역시, 공급망에 대한 현장실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관리 현황, 정보공개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역시 그러한 관행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공급망 실사 관련 ESG 이니셔티브 동향

♥ ESG 공시지표	♥ ESG 평가지표	♥ 글로벌 기업 관행
 152 유익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기업의 사업모델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20(1) 유익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에 대한 설명  308-1 환경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공급업체 비율 308-2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 비율 및 대응방법 407-409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자유 침해 가능성,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와 그 예방 조치 414-1 사회적 위험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비율 414-2 부정적 사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 비율 및 대응방법	 - 협력업체 행동강령 - 중요 협력업체 식별 - 공급망 위험 노출도 파악 - 공급업체 위험관리 - SCM 전략의 ESG 통합 - 공급망 관리 투명성  - 전과정 가치사슬을 고려한 친환경 공급망 정책 및 목표 - 협력업체 환경경영 리스크를 진단평가 - 협력업체 근로자 재해를 관리 및 공개 - 협력업체 안전 역량 정기적 평가 및 활용 -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의 이사회 검토 - 협력사 행동규범 정기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Good food, Good life - 각 ESG 정보별 정보공개 실시 - 공급망 지속가능성 목표 수립 및 매년 업데이트 - 원료별 공급망 인권실사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 Tier 1, Tier 2 원료별 공급망 정보 공개  - 각 ESG 정보별 정보공개 실시 - 공급망 지속가능성 목표 수립 및 매년 업데이트 -2022년 기후와 자연으로 중점 확대 -2030까지 생활임금으로 중점 확대 예고 - 공급업체 국가별 계약조항 공개

48) 오상호,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급망 실사법 제정 경위와 평가”, 『노동법논집』 제53집, 한국 비교노동법학회, 2021, p. 184.

2. 전략적 공급망 ESG 실사 체계 수립

1) 공급망 실사 정책의 수립

앞에서 살펴본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정책 수립, 협력업체 식별, 위험 관리, 문서화 및 보고, 유효성 평가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공급망 실사(주의의무)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련된 협력업체 식별, 위험관리, 보고,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식별하여 그 정보를 정책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산업에 특유한 위험의 종류를 식별하고 자사의 밸류체인을의 특성을 살필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계획의 선언이 필요할 뿐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규제는 <표 2>, <표 5>, <표 8>에서 확인되다시피 대부분 공급망 실사 정책의 구체적 공개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규제에 근거한 분쟁도 공급망 실사 정책에 공개된 구체적인 요소들에 의해 기반하여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급망 실사법이 선제적으로 제정된 프랑스의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소 제기 주체인 시민단체가 앞서서 실사정책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분쟁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절차는 대부분 실사 계획의 구체적 정보공개 여부를 확인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⁹⁾

2) 공급망 실사 체계의 수립

(1) 공급망 정보의 확보

무역과 관련된 ESG 규제는 특히 제품의 부품 중 일부가 위험 지역에서 제조되는 경우까지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실사를 위해서는 1차 협력업체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품이 제조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소재부품 및 원자재가 제조되는 지역 및 정보를 식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의 제품 분석뿐만 아니라 2차 협력업체의 정보를

49) Sherpa, "Guide de Reference pour les Plans de Vigilance", 2018.

1차 협력업체에게 요구하는 등, 1차 이상의 협력업체의 정보 제공 협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시 정보 요청 및 별도의 약정이 필요할 것이며, 과도한 경영정보 요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행동규범 수립 및 전파, 확약을 통한 공급망 관리

글로벌 공급망 실사 법률 및 이니셔티브는 인권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한 행동규범을 자사 및 자회사에 적용하고, 협력업체에까지 이를 적용하도록 확약하여 공급망의 ESG 이슈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행동규범은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협력업체에도 요구할 것을 정의하여, 1차 협력업체에게는 관련 행동규범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1차 협력업체는 2차 협력업체에 행동규범 준수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국내에는 “협력업체 행동규범”으로 적용되어 자사에 적용하지 않고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행동규범을 작성하는 관행이 일부 발견되는데, 이 경우 협력업체에는 일종의 갑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이 자사 및 자회사의 실사의무를 먼저 규정하고 이를 협력업체로 확장시키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3) 공급망 위험 관리

공급망 위험 관리는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와 관련한 위험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특히 이러한 위험 식별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기업에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절차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최근 OECD 가이드라인 및 GRI Standards,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은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큰 이해관계자를 먼저 관리하도록 하여 이른바 Risk-Based Due Diligence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기반의 실사를 통하여 위험이 식별되면, 이미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가 일어난 경우 구제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관련된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전술한 협력업체와의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확약사항에 근거하여,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통해 공급망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서화 및 보고체계 수립과 유효성 평가

공급망 실사 관련 법률 및 이니셔티브는 공급망 관리의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거나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률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공급망 실사 관련 정책과 결과를 문서화하여 공개하거나 보고할 것을 요구하나, 이니셔티브에 따라 대응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역시 공급망 실사를 대응할 경우, 실사를 요구하는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서화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 수준의 문서화는 장기적인 업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련의 정책 이행이 유효한지 평가하는 자료에 이러한 문서화된 결과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유효성 평가는 전반적인 실사를 통해 이전의 실사정책이 유효한지 전체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IV. 법적 검토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1. 법적 검토의 필요성

1) 관련 법률과 규제, 이니셔티브의 정확한 식별

최근 ESG가 화두가 되며, 각 기업마다 ESG 담당 인원을 두고 ESG와 관련된 규제 및 공급망 실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ESG는 기업의 경영 전반과 관련된 이슈로, 기업의 각 이슈와 관련된 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환경규제대응, 인사노무, 공정거래 등 다양한 법률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 ESG 평가 및 투자 전문가의 경우, 국내외 법률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실무상 확인할 수 있으나 오히려 법률전문가의 경우 ESG를 기존의 업무와 다른 영역으로 치부하여 ESG 전담팀에게 맡겨두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의 목적은 경영진이 판단

해야 할 경영판단의 영역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정책과 체계의 수립은 대부분 법률적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구체적 정책의 수립 및 행동규범 제정, 계약상 확약은 기업의 내규 제개정과 뗄 수 없는 부분이며, 공급망 위험 관리에서의 위험은 국제협약 및 관련 국내법 위반의 법적 위험을 일컬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규제 식별 아래, 각 기업은 경영환경에 적합한 규범을 식별하고 현행법을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비용효과성 있는 무역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내외 수출입 제한 목록의 검토

대외무역법 제11조는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제19조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FLPA 및 EU의 이중용도규제 역시 목록 기반의 규제를 통해 수출입 제한 품목 및 관련 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기업 담당자는 사전 식별을 통해 수출입에 있어서 제한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니셔티브인 RBA 및 분쟁광물 규제 역시 수출입 제한물품과 관련한 지표를 두고 있으며, 그 외의 공급망 실사 규제에 있어서도 수출입 제한은 중요한 공급망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는 ESG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3)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에의 ESG와 무역 이슈 통합

공급망 실사와 관련한 법률은 대부분 리스크관리에 공급망 실사를 통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살펴본 해외 법률 및 이니셔티브에서의 공급망 실사의 프레임워크는 준법지

원인의 업무와 유사하다. 법무부와 상장회사가 2018년 발간한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준법지원인의 임명 및 준법통제활동으로서 법적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교육훈련과 일상적 준법지원 및 준법점검, 내부제보와 위반사의 처리, 유효성 평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준법통제기준의 프레임워크에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관련 사항을 적용하면 ESG 관점에서의 무역 및 공급망 실사, 컴플라이언스 또한 수월하게 지원될 수 있다.

2. 정책 및 입법을 통한 지원

1) 수입 시 공급망 정보의 확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망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각각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해 2차 협력업체의 정보를 요구하는 등, 원자재가 다양하고 밸류체인이 복잡한 기업의 경우 현실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은 정보 식별이 요구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공급망 식별이 요구되는 수출통제 제도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실사 이니셔티브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지원하려면 수입 물품에 대한 공급망 정보 식별 요구가 필요할 것이다.

2) 협력업체 표준계약서 지원

행동규범 수립 및 전파, 확약을 통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는 하도급 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 등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 공급망 실사 법률 및 이니셔티브를 대응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표준계약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계약서의 작성은 공급망 관리를 위한 강력한 장치로서, 해외의 공급망 실사 관련 법률 역시 계약을 통해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실무상 반부패 및 품질에 관한 실사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며, 최근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는 품질과 관련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협의 하의 중간검사 및 목적물 최종 검사 실시 등 품질에 관한 실사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중대재해에 따른 목적물 제조 지체에 따른 원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 일부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두고 있는데,⁵⁰⁾ 이를 적극적으로 환경 및 인권, 반부패 실사 관련 사항에까지 확장하여 기업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의 ESG 관점 공급망 실사의 자율적 이행에 큰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EU 지침 등의 역외적용 문제에 관한 대응

UNGPs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청되는 국가의 역외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⁵¹⁾ EU 내에서 선제적으로 제정된 공급망 실사법을 위시하여 현재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예정된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의 경우, 일정 기한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적용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해외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하여는 기업의 자구적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이나,⁵²⁾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존의 산업구조상 해외 수준의 인권 및 환경 관리를 위해서 자원의 투입이 불가피한 바, 정부 차원의 국제적 협력방안의 마련을 위한 노력 및 국제적 마찰의 완화 및 해소방안 역시 중요할 것이다. 법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국가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입법도 발의된 바 있다.⁵³⁾

V. 결론

ESG는 투자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 공급망을 아우르는 규제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사법, 행정 및 기업에서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ESG는 경영학의 일부이거나 환경공학, 사회공헌과 복

50) 공정거래위원회, “골판지(상자 등)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22. 12. 28.

51) 정은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채택 이후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 강화에 대한 고찰, 서강법률논총 제7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률연구소, 2018.

52) 전민철,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미국, EU의 관련 입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법학 제29권, 연세법학회, 2017, 221면.

5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옹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2. 7. 11.

지의 영역으로 치부된 바 없지 않다.

그러나 ESG 이슈 관리는 법률 검토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니셔티브와 연성규범을 포함하여 규제화되는 사항들은 법률 전문가의 정치한 검토 아래 기업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출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장벽이 될 수 있는 ESG 관련 규제는 법률가의 검토 아래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정부의 지원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에서 ESG 이슈 관리의 유인은 비용 최소화와 효율적 경영, 기업 가치 제고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법률가들의 정확한 검토 아래, 제도의 오해에서 비롯된 비용 일변도의 "ESG 경영"에 앞서 비용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ESG 이슈에 따른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박언경·왕상한,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의 함의”, 「법제연구」 제61호, 한국법제연구원, 2021.
- 박효민·이인화, “인권을 근거로 부과되는 수출통제 및 제재”, 「무역안보 BRIEF 2022」 Vol. 2, 전략물자관리원, 2022.
- 장윤제, “ESG 관련 투자계약의 법적 분쟁 사례와 쟁점”, 「기업법연구」 제36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22.
- 장혜진·최윤정, “ESG 환경에서의 공급망 실사법”, 「환경법연구」 제45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23.
- 전민철,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미국, EU의 관련 입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법학」 제29권, 연세법학회, 2017.
- 정은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채택 이후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 강화에 대한 고찰”, 「서강법률논총」 제7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률연구소, 2018.
- 허난이,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법상 무역제한조치의 국제규범 합치성 검토 —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64호, 안암법학회, 2022.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 반영”, 2023. 8. 4.
-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2023. 5. 24.
-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2011.
- 법무법인 세종, “OECD, 10년 만에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2023. 7. 21.
- 법무법인 세종, “미국 및 EU 發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美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집행 강화 및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입안 경과”, 2023. 7. 3.

- 법무법인 태평양, “ESG 공시, 쉽게 이해하기 - 유럽의 지속가능 공시, ESRs에
답이 있다”, 2023. 1. 6.
-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2020.
- 한국ESG기준원, “KCGS ESG 모범규준”, 2022.
- KOTRA, “미국 수출통제 제도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
- KOTRA, “유럽 ESG 이니셔티브와 평가제도”, 2023. 6. 28.

2. 외국 문헌

- IFRS,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2023.
- MSCI, MSCI ESG Controversies and Global Norms Methodology, 2023.
- Pollman, Elizabeth. “The making and meaning of ESG.” U of Penn, Inst for Law & Econ Research Paper 22-23, 2022.
- Sherpa, “Guide de Reference pour les Plans de Vigilance”, 2018.
- S&P Global, “2023 CSA Handbook”, 2023.
- THE GLOBAL COMPACT,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vii”, 2004.
- United Nations Hyman Rights Special Procedures, “A ROADMAP FOR THE NEXT DECAD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2021.

ABSTRACT

Legal Issues on Activating Trade Through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on ESG Perspective

Jang, Yoon-Jae*

Recently, ESG-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rom non-binding guidelin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OECD, which previously existed as soft norms, to national laws.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export controls based on human rights issues directly related to trade, regulations o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related disclosures are expected to be applied offshore as an EU initiative. In response, the government is providing various support measures for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anies are also responding through various methods, but there is a risk that efficient responses may not be made due to a lack of legal review and understanding.

Therefore, a review based on legal understanding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Korean companies and revitalize trade. In this study, we reviewed ESG-related regulations that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trade, and related issues and systematic measures for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from an ESG perspective. It also suggests ways to secure corporate autonomy, efficiency, and legal compliance in policy and legislative support for ESG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and examines the role of lawyers as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corporate experts.

* Shin & Kim, LLC., Head of ESG Research, Ph. D. in Law.

Keywords: supply chain, due diligence, ESG, sustainability, export control,
trade regulation